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(3공구)]

□ 점검일시 : 2017.10.10 (화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정달영, 박철호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 정거장 난간외측에 돌출된 복공판 상부에서 작업중인 작업자가 안전대걸이시설이 없고, 안전대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이니 안전난간이나 안전대고리 시설을 설치 요함.(NO.1)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 정거장 일부 난간이 미설치되어 있고, 그 단부에서 작업자가 작업중으로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요함.(NO.2)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 정거장 난간외측에 지중경사계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계측시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계측작업시 추락재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 등 검토 요함.(NO.3)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 정거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의 전면유리가 파손되었으니 교체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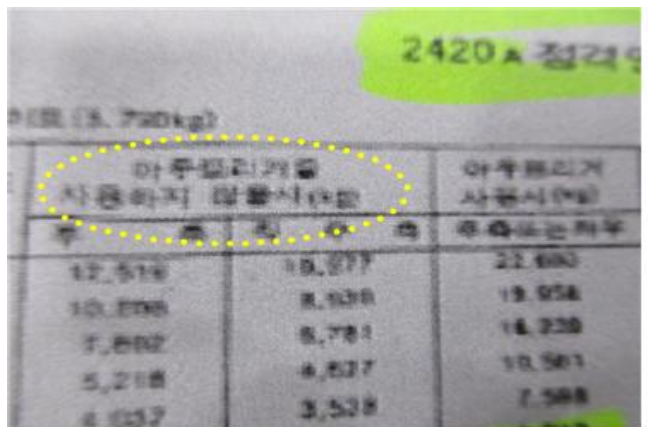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 정거장 작업중인 크롤러 크레인(9월 14일 반입) 장비실명제 카드가 미부착되어 있으니 조치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32(굴삭기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 정거장과 110E환기구 토공작업중인 크레인 장비작업계획서 및 크램셀을 인양하는 체인 및 와이어는 다음 사항을 보완 요함.
- ① 유효중량의 오류(작업반경의 장비제원보다 최대중량이 초과)
- ② 달줄(와이어, 체인, 샤클 등)의 제원이 와이어만 기재되었으니 기타 달줄의 제원 표기 요함.
- ③ 110E환기구는 아웃트리거를 인출하지 못하므로 그에 맞는 제원 표기 요함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30(와이어로프)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0E 환기구 계단하부 집수정이 설치된 곳은 난간이 자석으로 고정되어 지지가 불안전하고, 난간과 통로사이 공간이 있어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견고한 난간으로 보완 요함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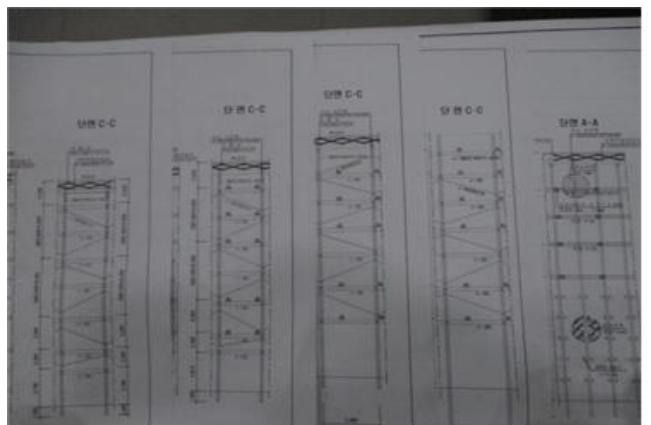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10E 환기구 양수기는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설치 요함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 정거장 가시설은 수직브레이싱 설치상태를 도면확인 후 필요시 시공상세도 작성 등을 작성하여 누락된 곳이 없도록 조치 요함.(type a~e 중 최상부 설치된 곳과 안된 곳 등 확인 요함)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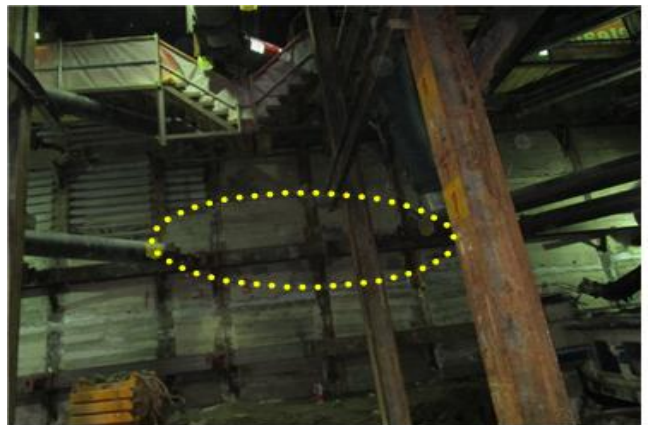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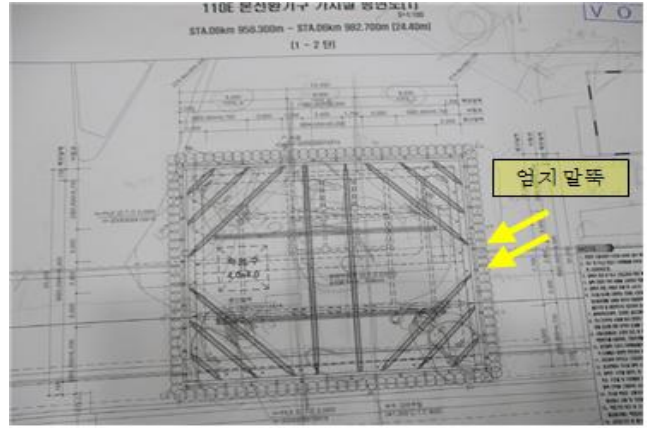
- 110 정거장 상수도관(D500) 매달기 부재 손상부 및 지지부재의 용접부족부는 보완 요함.

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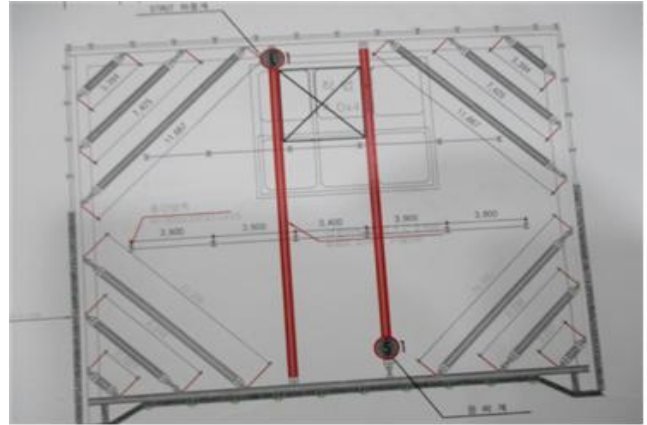
- 110E환기구 우각부 버팀보 위치가 도면과 상이하니 확인하고 띠장 및 우각보버팀보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요함.



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10E환기구 작업구 근처는 크레인 및 덤프트럭이 상주하는 위치이고 중간말뚝의 강축방향 고정되지 않아 좌굴 위험성이 있으니 검토 후 필요시 보강 요함.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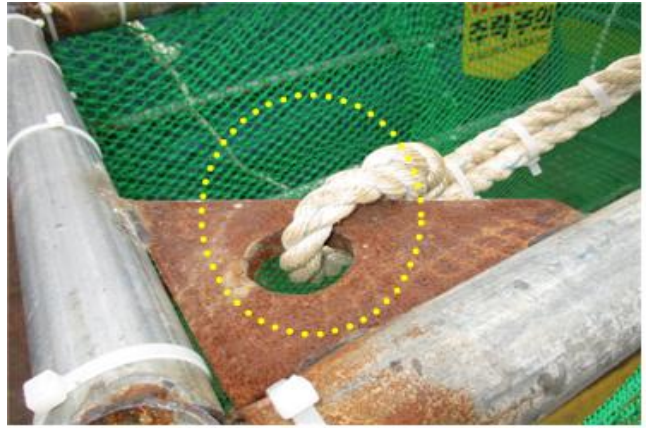
- 슬링벨트는 보풀이 일고, 흠이 있는 것은 폐기 기준을 준수 요망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31(벨트슬링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중량물 인양시 로프를 인양물에 발 걸지 말고 후크나 샤클, 링 등의 당기구 용구를 사용하여 인양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(링 등의 구비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현재 스티프너를 설치중인 것으로 판단되나, 아직 스티프너가 미설치된 곳은 전수조사하여 조속히 스티프너를 설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기 등의 위험방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우각부 사보강(버팀)재는 밀림 방지를 위한 스톱퍼를 설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기 등의 위험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흡연장소 등은 화재의 염려가 있으므로 소화기 비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(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정거장 진출입 계단 일부는 상부난간이 미설치되어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니 규정대로 설치 요망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(안전난간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정거장 진출입 가설통로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작업중으로 근로자 협착의 위험이 있으니 가설통로를 장비와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BP장 상부 이동을 위한 계단 앞에 항공마대와 자재가 놓여 있어 이동이 어려우므로 장애물을 제거 조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정거장의 분전함과 환기구의 일부 분전함은 충전부 방호장치가 없고 관리책임자가 미선임되어 있으므로 조치 요망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오폐수 처리장의 콘센트는 미접지 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치 요망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7(가설전선)

